

1

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 예산전용 보고

치과의사 계약 만료에 따른 채용 과정에서 공백기간 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□ 전용사유

- 치과의사 계약기간 만료(5.31.)에 따른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미달 및 합격자 임용 포기 등으로 **장기간 진료공백(6.2.~ 8.29.) 발생**
- 공백기간 내 기간제 근로자(치과의사) 채용으로 치과 정상 운영 및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전용

~5.31.(일)	6.2.(월) ~ 8.29.(금)	9.1.(월)~
치과의사 계약임기 만료	(공백 기간) 기간제근로자 근무	신규임용자 근무시작

< 부속치과의원 임기제 치과의사 채용 경과 >

채용 공고(3.14.) → 채용 미달 → 채용 재공고(4.18.) → 면접(5.30.) → 최종합격 발표(6.2.) → 합격자 임용포기(6.5) → 채용 재공고(6.13.) → 합격자 공고(8. 1.) → 임용승인(8.11.) → 근무 시작(9.1.)

□ 전용내역

- 전용금액 : 금18,000천원(금일천팔백만원)
- 전용내용 :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 조정(공공운영비→기간제근로자등보수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예산전용		예산 현액	집행액 (집행률)	집행 잔액
정책	단위	세부	통계목	증	감			
인적자원 역량강화	공무원 복지증진	부속의원 운영	공공운영비 (201-02)	-	△18,000	191,528	89,528 (46.7%)	102,000
			기간제근로자등 보수 (101-04)	18,000	-	22,929	12,602 (55%)	10,327

※ 전용금액 18,000천원 중 6,7월 기간제 인건비 10,770천원(59.8%) 집행 완료, 8월 인건비 추가 집행 예정

⇒ 전용을 통한 예산 부족분 확보로, 치과운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안정적 집행 중